

## 부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 지정 예고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 의거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문화유산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지정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6월 3일  
부산광역시장

### 1. 공 고 명 : 부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 지정 예고

### 2. 공고사항

연번	지정사항	문화유산명	수량	소재지	소유자(관리자)
1	유형문화유산	울도산해록 (鬱島山海錄)	1책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45	해양수산부 (국립해양박물관)

### 3. 예고사유 : 붙임 참조

### 4. 예고일자 : 시보 공고일

### 5. 예고기간 : 시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6. 연 락 처

#### ○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 주 소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 전 화 : 051-888-5082 / 팩스 : 051-888-5069
- 홈페이지 : <https://www.busan.go.kr>, 전자메일syjs1016@korea.kr

#### ○ 부산광역시 영도구

- 주 소 : (47545)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
- 전 화 : 051-419-4066 / 팩스 : 051-419-4069
- 홈페이지 : <https://www.yeongdo.go.kr>

붙임 부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 지정 예고 사유 1부. 끝.

□ 울도산해록(鬱島山海錄)

- 명 칭 : 울도산해록(鬱島山海錄)
- 소유자(관리자) : 해양수산부(국립해양박물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45
- 수 량 : 1책
- 재질·형상 : 저지(楮紙), 필사본
- 규격(cm) : 20.5×30.1
- 지정사유

『울도산해록』은 1881년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된 이규원이 1882년 4월부터 5월까지 울릉도를 검찰한 전 과정을 담은 「울릉도검찰사이규원일기(鬱陵島檢察使李奎遠日記)」와 고종(재위1863-1907)에게 올린 보고서인 「별단(別單)」, 그리고 「별단격식(別單格式)」과 「입시시연설(入侍時筵說)」 등을 함께 묶은 책이다. 『울도산해록』은 당시 울릉도의 일상과 수토 관련 정책 변화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울릉도 검찰 과정에서 작성된 일기에는 매일의 날씨와 지형, 이동 경로, 울릉도에서 만난 인물 및 그들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또한 19세기 울릉도의 실태와 섬으로 향하는 왕래 경로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자료적 가치가 높다. 또한 이 책은 이미 학계에 알려진 이본(異本) 『울릉도검찰일기』를 보완하는 완본 형태의 정서본(淨書本)이다.

『울도산해록』은 조선이 동남 해역의 해양방위 체계와 영토 수호 전략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 자료이자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은 후속 개척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었다. 1883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울릉도 이주가 시작되었고, 같은 해 7월에는 강원감영에서 울릉도 호구 조사보고서인 『강원도울릉도신입민호인구성명연세급전토기간수효성책(江原道鬱陵島新入民戶人口姓名年歲及田土起墾數爻成冊)』이 간행되었다. 19세기 울릉도의 지리·생활 실태뿐 아니라 조정에서 바라보던 울릉도에 대한 정치적 변화와 정책 전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해당 일기는 매우 큰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